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8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2. 1.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2. 1. 10. 접수 제1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2. 1. 10. 접수 제134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실질적으로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주)')은 2016. 11. 25. D에게 1,600만 원을 연 이율 12.5%, 대출기간 12개월로 하여 대출했다.

나. 원고는 2022. 9. 22. E(주)로부터 E(주)의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E(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위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했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22. 10. 28. D의 주소지에서 D의 처인 F에게 송달됐다.

다. 원고는 2022. 11. 7.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22차전351443호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액인 18,227,808원과 그 중 1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위 지급명령은 2022. 12. 7. 확정됐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G(이하 '망인')가 2021. 9. 2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H은 3/11 지분을, I, J, D, 피고는 각 2/11 지분씩을 상속했다. 피고 및 D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2. 1. 10. 접수 제1345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또는 지분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D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2016. 11. 25.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원고의 채권양수 이전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주)이 2016. 11. 25. D에게 1,600만 원을 대출하라는 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2016. 11. 25.경부터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6. 11.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더라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19.

12. 5.까지 E(주)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관한 이자를 변제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채무승인으로 2019. 12. 5.까지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19. 12. 6.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부적법하고 채권양도통지서가 D에게 송달된 적도 없어 원고를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양도인인 E(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위임받은 후 채권양도통지의 위임인을 E(주)로, 수임인을 원고로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D의 주소지로 발송했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D의 처인 F이 송달받았으므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권한자인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사회통념상 D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D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면서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분인 2/11 지분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D과 남매지간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부터 D이 이전에 순대공장을 운영하다 부도를 내고 그 재산을 모두 잃은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의 2023. 6. 20. 제출 요약준비서면 3쪽).

③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와 D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갑 제10호증의 2쪽) 피고는 D의 재무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2022. 1. 3.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2022. 1. 10. 마친 이 사건 소유권 등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홍걸

별지

1. 익산시 K 전 3,653㎡
2. 익산시 L 도로 172㎡ 중 1/2 지분(C 지분). 끝.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지분'이어서 등기부상 '지분이전등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수정했다.